

미국판례

게재동의서의 진위에 대한 확인없이 모델의 누드사진을 게재한 잡지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Gallon v. Hustler Magazine Inc.

732 FSupp 322(뉴욕주연방북부지방법원, 1990)

사건개요

원고인 Sabrina Gallon 양이 피고인 Hustler 잡지사를 상대로 동 잡지사가 1983 년 10 월호 「Hustler」잡지에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누드사진을 Wood 라는 유부녀의 이름으로 게재한데 대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원고는 배심재판을 포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피고잡지사가 게재동의서에 기재된 내용이 진정한 것인지, 원고가 사실상 게재에 동의한 것인지에 관하여 경솔하게 간과하고 원고의 누드사진을 게재하여 원고의 사적인 사실이 공개되고, 원고를 일반인에게 잘못 비취지도록 하여 뉴욕시민권리법 제 50 조와 제 51 조를 위반하였는지가 쟁점으로 제기되었다.

판결요지

피고잡지사가 모델의 누드사진을 명백히 성관계물인 잡지에 게재하는 경우 누드사진의 개인적 프라이버시에 대한 민감한 영향을 고려하여 제출된 동의서의 진정성립여부를 확인하는 상당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솔히 간과하여 아무런 확인절차를 취함이 없이 원고의 누드사진을 게재한 행위는 뉴욕시민권리법 제 51 조를 위반하는 행위로서 피고 잡지사는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결이유(요약)

판사 McAvoy 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원고 Sabrina Gallon 은 1961. 3. 14. 생으로 이 소송제기 당시 26 세로서 뉴욕 Queens 의 Jamaica 아 거주하고 있다. 그녀는 1979. 7. 뉴욕미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Syracuse 대학교에 입학하였다. 피고 Hustler 잡지사는 Ohio 주의 회사로서 California 의 Los Angeles 에 본사를 둔, 「Hustler」라는 잡지를 발간하는 회사이다. 「Hustler」는 출판업계에서는 남성의 성적 기호를 위한 잡지로서 매월호 상당한 부분이 노골적인 성적 관련기사에 할애되고 있다
2. 원고는 1979. 9. Ramsey 라는 남자를 만나 사귀다가 1980. 12.부터 1982. 6.까지 동거생활을 하였는데 동거기간중인 1982. 봄에 문제된 원고의 누드사진이 동거하고 있던 아파트에서 Ramsey 에 의해 촬영되었다 당시 원고는 이 사진들이 어떠한 잡지사에도 보내지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하였다. 원고는 1982. 6. 고등교육기획프로그램의 강사로서 대학기숙사에 기거하다가 같은 해 가을학기 시작무렵 다시 Ramsey 와 동거하던 아파트로

돌아왔는데, 그 해 12. 원고는 자의에 반하게 하루 반나절 동안 Ramsey 에 의해 신체적 및 성적으로 가혹행위를 당하였다. 원고는 다음해인 1983. 봄학기 등록을 하기 위해 Sacuse 로 돌아가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 St. John's 대학교에 등록하였다. 같은 해 1. Ramsey 에 대한 학생징계청문회에 참석키 위해 Syracuse 로 잠시 돌아왔다. 그 후 원고는 그 해 9. 가을학기를 시작하기 위해 Syracuse 로 다시 돌아왔는데, 당시 원고는 친구들로부터 그녀의 누드사진이 「Hustler」 잡지에 게재되었다는 사실을 들었다.

3. 원고의 누드사진과 표제는 「Hustler」의 1983. 10 월호 전 미국 및 국제판에 게재되었다. 원고의 사진이 게재된 「Hustler」 잡지 부분은 「해리수렵」(Beaver Hunt)이라고 불리어지는 매달 연재되는 아마추어 사진작가의 누드모델들의 스냅사진모음 부분이다.

4. Michael Heimowitz 는 1983. 1. 피고잡지사의 조사원으로 고용되어 당시 원고의 사진과 게재동의서 등에 관한 확인문서들을 검토하였다. 그는 당사자가 원하지도 않고 의도하지도 아니하는 어떠한 사진도 잡지에 게재되지 않도록 당사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자인하면서 만약 사진 및 동의서가 당사자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를 고려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가 피고잡지사의 조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이해하고 있었던 내부적 정책이자 의례적 절차인 것이다. 그는 증인진술서에서 문서를 검토함에 있어 필체 등을 조사하여야 함이 통상적인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지 신청서와 사진을 수령하고 검토한 뒤 동의서에 기재된 주소로 전보를 발송하여 동의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어달라고 요청만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동인은 동의서의 형식 및 동 문서에 기재된 서명이 위조라는 사실에 주의를 하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러한 예방조치가 필요한 존재이유에 대해서도 몰랐음이 명백하다. 더구나 동의서 상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불일치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런 인상을 갖지 못하였다.

5. 재판부는 피고잡지사의 확인절차의 적절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갖고 있다. 누드사진의 게재는 매우 민감한 문제로서, 「해리수렵」란의 모델들의 사진게재의 유효성을 스냅사진이 통상게재 될 목적으로 의도되지 않고 제작되고 있는 점에서 특별히 고려할 사항이다.

그럼에도 피고잡지사의 확인절차상으로는 그와 같은 실제적인 확인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하였다. 즉 동의서에 대하여 공증을 요구하여 기만에 의한 동의서 제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한다면, 최소한 모델의 사회보장번호 내지 자동차면허 번호를 제공하게 하여 이를 쉽게 확인해 본다든지 하는 확인장치를 갖추지 아니하였다.

Heimowitz 는 당시 수취인 비용부담의 전화(collectcall)를 받았을 때 대화내용이 녹음되도록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한 바도 없고, 전화내용을 신뢰하기 앞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걸려온 전화번호로 다시 전화를 건 바도 없었다. 나아가 그는 Syracuse 지방에 있는 Sabrina Gallon 의 전화번호와 동의서에 있는 Jennigs 라고 밝힌 사진작가의 전화번호도 전화국에 문의한 바도 없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잡지사의 조사부서가 문제된 동의서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내부절차조차도 취한 바 없음이 명백하므로, 더 나아가 피고잡지사의 확인제도의 적절성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피고잡지사는 이 사건과 유사한 많은 사건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확인절차의 미비를 족히 알고 있었다고 의제됨에도 게재동의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절차 등을 수정, 변경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6. 피고잡지사의 확인절차와 이 사건 문제된 동의서에 대하여는 Rutgers 대학교의 커뮤니케이션관계 법률 및 역사담당교수인 Richard F. Hixon 에 의하여 검토되었는데, 그는 이 사건 동의서가 「사진게재에 필요한 동의서 화보라는 저널리즘의 분야에서 인정된 관행을 벗어난 것이다」라고 결론을 짓고, 그 근거로 Sabrina Gallon 이름으로 제출된 동의서는 피고잡지사 자체의 확인기준에도 반하게, 전화번호도 기재되지 않았고, 사용된 잉크색도 서로 다르고, 법적 서명도 명백하지 않은 점 등을 들고 있다.
7. 피고잡지사는 동의서 기재내용이 사실인지, Gallon 양이 사진게재를 실제로 동의하고 있는지, 사진게재로 야기될 침해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관해서 이를 경솔하게 무시하고 행동하였는데, 피고잡지사로서는 당사자의 진정한 동의가 없는 한 문제된 사진의 게재가 매우 침해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이다.
8. Gallon 양의 누드사진을 게재함으로써 피고잡지사는 사적인 사실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였고, 그러한 게재는 통상의 지각력을 갖춘 합리적인 사람에게는 매우 권리침해적임이 인정되고, 달리 그러한 사진은 일반인에게 적법한 관심사항이 될 수 없음도 명백하다. 나아가 Gallon 양의 누드사진을 게재함으로써, 피고잡지사는 그녀가 일반인에게 잘못 비춰지도록 하였는데, 이는 통상 사진게재시 모델의 동의가 전제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녀가 위 「해리수렵」란에 자신의 사진이 게재되는데 동의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게재된 사진의 장면에서 나타나는 성적인 환상은 그녀가 그러한 환상을 결코 한 바도 없을 뿐 아니라 그러한 내용의 게재에 동의한 바도 없었으므로 일반인에게는 잘못 비춰질 수 밖에 없고 따라서 합리적인 사람에 대해 매우 침해적인 것임에도 이런 점등에 대해서 피고잡지사로서는 경솔하게 이를 간과하고 행동한 것이다.
9. 「Hustler」에 사진이 게재된 결과, Gallon 양은 정신적으로 상처를 입었다. 원고는 이로 인해 불안정해지고, 사회 및 과외활동에 관여하지 않게 되었으며, 매우 내성적이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사례를 열거한 바 그 주장의 진실성을 의심할 아무런 이유도 발견되지 않는다.
10. 이 소송에서 원고는 원고측 선정의 Thomas Falic 박사와 피고측 선정의 Geoffrey M. Margo 박사의 정신감정을 받았다. Falci 박사는 원고가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에서 설명하고 있는 「적응혼란증」을 겪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그는 이러한 적응혼란증에는 「Hustler」잡지에 그녀의 사진이 게재됨으로써 야기된 스트레스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 즉 그녀는 이러한 사진게재로 인해 자기존중의식의 결핍과 생활통제능력결여를 보이고 있는데 치료기간은 불확정적이나 정신요법치료를 개선될 수 있다고 감정하였다. Margo 박사 역시 원고를 감정한 결과 그녀가 위 편람상의 경증의 만성 「외상후스트레스혼란증」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다. 원고의 엄격한 성장과정상 형성된 자기부정과 억압의 심리적 방어체계에 의해 성격적으로 수치와 죄의식이 강한 상태에서 겪었던 이 사건은 그녀가 지속적으로 삶의 무가치성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Margo 박사는 「Hustler」잡지의 사진게재가 원고의 심리적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서 정신요법치료가능성에 동의했다. 즉 두 감정인은 이러한 사진게재가 Gallon 양의 생활에 있어 외상적 사건이고, 그로 인해 심리적으로 손상을 입은 사실 및 이러한 심리적 혼란에 대해 정신요법적 치료의 필요성에 대해서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단지 Margo 박사는

원고의 생활에 있어 과거의 사건들에 대해 보다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진게재가 그녀의 심리적, 감정적 손해의 원인임에는 동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두 감정인의 문제의 유일한 차이점은 인과관계의 문제에서가 아니라 손해액의 정도문제에서이다.

11. 끝으로 법률판단에 대해서 보건대, 법령상의 작위, 부작위 및 위반은 만약 그것이 손해발생의 실질적 요인이 된다면 침해의 근접 원인이 된다. 즉 구체적 사실 및 정황으로부터 인과관계가 합리적으로 추단 되어지는 경우 원고는 절대적 확실성에 기초한 인과관계 및 여타 가능한 원인의 존재에 관한 주장, 입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피고는 명백히 뉴욕시민권리법 제 51 조를 침해한 바 그 중 일부 규정은 다음과 같다. 「자기의 이름, 초상 및 사진이 서면 동의 없이 주내에서 광고의 목적 또는 거래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는 형평 법상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또한 제소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러한 침해로 원고에게 정신요법 치료를 요하는 정신적 손해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당하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으로 금 30,000 달러를 지급할 것을 명한다. 다만 피고잡지사의 불법행위는 징벌적 손해액지급 판결을 명할 정도의 고의적이거나 자의적인 행위로는 보여지지 않으므로 별도로 징벌적 손해배상은 명하지 아니한다.